



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[시행 2013.1.10] [서울특별시규칙 제3885호, 2013.1.10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(기획담당관) 02-2133-6646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의 미래비전 설계,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갈등해결방안 제시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소속 하에 시정고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(이하 “고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정의 비전·목표·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
2.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
3.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갈등조정 방안 모색
4.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·전달
5.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고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고문으로 구성한다.

- ② 고문은 행정, 법조계, 학계, 기업·경제, 언론계, 문화,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③ 대표는 제2항의 고문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제4조(고문의 임기)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.

- ② 고문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대표의 직무) ① 대표는 고문단을 대표하고 고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고문이 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대표는 고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고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1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 2.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3. 시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-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가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고문을 소집하여 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개별적 자문 및 의견청취 등) ① 시장은 사안별로 고문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고문은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충실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에게 시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한다.

제8조(간사와 서기) ① 고문단의 실무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기획담당관 소속 담당사무관이 된다.
- ③ 간사는 고문단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제9조(수당 등) ① 고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고문단 활동에 참여한 고문 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기타 고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견청취) 고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 <제3885호, 2013.1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